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716호)

2022.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지 민



# 목 차

|                                                          |    |
|----------------------------------------------------------|----|
| I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안(2114716) .....                           | 1  |
| 1. 제안경위 .....                                            | 1  |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3. 검토의견 .....                                            | 3  |
| 가.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자료·정보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9조의2<br>신설) ..... | 3  |
| ※ 참고자료: 드론교통관리시스템과 드론정보체계의 비교 .....                      | 16 |



# I.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안(2114716)

##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2. 2. 9.

다. 회 부 일 : 2022. 2. 10.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 활용 범위 확대 등 국내 드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드론 불법 비행, 드론 뺑소니 등 크고 작은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종합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임.

그러나, 드론 사고발생 시 지방항공청,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신고 접수·처리되고 있어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드론 사용사업체 등 의무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 청구 등의 보험 이력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정부차원의 보험가입 유도 등 체계적인 안전개선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드론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기체 신고 정보, 종사자 자격 정보,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 등이 분산·관리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법적 근거도 없어 드론 종합 안전관리에 어려움

이에,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및 보험정보를 통합하고 드론의 기체

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 3. 검토의견

#### 가.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자료·정보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드론 관련 사고 현황·이력 등에 관한 정보</li> <li>2. 드론 관련 보험가입·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정보</li> <li>3.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정보</li> </ol> |

|  |                                                                                                                                                                                                                                                                                                                                                                                                                                                             |
|--|-------------------------------------------------------------------------------------------------------------------------------------------------------------------------------------------------------------------------------------------------------------------------------------------------------------------------------------------------------------------------------------------------------------------------------------------------------------|
|  | <p>4.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u>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정보</u></p> <p>5.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u>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보</u></p> <p>6.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
|--|-------------------------------------------------------------------------------------------------------------------------------------------------------------------------------------------------------------------------------------------------------------------------------------------------------------------------------------------------------------------------------------------------------------------------------------------------------------|

## 2) 국토교통부 의견

드론의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관련 자료의 요청 등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함.

### 3) 검토의견

최근 드론산업<sup>1)</sup>의 활용도와 성장세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드론 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17.11)하는 등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sup>2)</sup>

현재 세계 드론시장은 2020년 기준 225억 달러로, 연평균 13.8% 성

#### 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 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하여 2025년에는 42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드론시장은 2016년 704억원에서 2020년 4,945억원(드론활용산업(3,645억원), 제작산업(1,300억원))으로 급성장하였음.<sup>3)</sup> 이러한 드론시장의 성장에 따라 기체 신고대수, 드론 관련 예산, 조종자격 취득자 등 드론산업 관련 주요 지표들도 증가하고 있음.<sup>4)</sup>

그런데 이와 같이 드론 활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불법비행, 추락사고 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에 드론의 생애주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드론 관련 업무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불법드론 관리 및 대응 강화, 드론사고 대응력 제고 및 드론 보험 합리화 등을 위한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임.

안 제9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드론 정보체계의 내용으로, ①드론 관련 사고현황·이력 등의 관련 정보, ② 드론 관련 보험가입·보험금청구 등의 관련 정보, ③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한정)의 신고

---

3)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012.12.14.)”, 드론산업발전협의회(관계부처 합동).

4) 드론기체 신고대수(누적) : ('16) 2,172대 → ('21.6) 26, 035대(12배 ↑)  
드론 관련 일반예산 : ('17) 87억원 → ('21) 395억원(4.5배 ↑)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누적) : ('16) 1,351명 → ('21.6) 57,918명(42.8배 ↑)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정보,<sup>5)</sup> ④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한정)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정보,<sup>6)</sup> ⑤

5)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⑥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6)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보<sup>7)</sup> ⑥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구축·운영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7)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 제2호에 해당하여 제49조제8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⑧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⑨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천만원”으로 본다.

현행 드론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 체계를 살펴보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관리 업무는 지방항공청(「항공사업법」 제75조8)),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는 사고조사위원회(「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9)),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조종자 자격 관리, 초경량비행장

- 8) 현행 「항공사업법」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관련 업무를 지방항공청에 위임 중이나, 드론의 활용분야 및 수요가 증가하면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지방항공청에서 1~2인의 인력으로 수행 중인 이들 행정업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1년 「항공사업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법 시행일인 2022.12.8.부터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예정이다.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만 위임한다.

28.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 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 다.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 라.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 마.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 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 사.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 아.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 자. 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 차. 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9)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조건 유지 여부 확인 등의 업무는 교통안전공단(「항공안전법」 제135조<sup>10)</sup>)이 수행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각 기관에 드론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어 드론 데이터 활용을 통한 안전대책 마련이나 드론과 관련된 정보 수집이 어려운바, 사고현황, 보험정보, 기체 등록 및 신고 정보, 종사자정보, 사업체정보, 기체인증 정보 등 드론 전 생애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 보험이력관리 및 사고정보관리시스템 관련 용역을 실시('22.2.21~12.22)하고 있으며, 조속히 드론 정보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은 내용의 드론 종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3년 1분기부터 이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10) 「항공안전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 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 【 드론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개요 】



자료: 국토교통부

안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외에 민간 보험사에도 드론 보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됨.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및 지방항공청에 드론 사고로 접수된 건수는 11건(2015년~2021년)에 불과하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건수는 700여건에 이르는 등<sup>11)</sup>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 기반 사고예방체계의 제도화 수준이 미흡하므로,

11) 대한뉴스(2021.9.16. 기사), “드론 사고는 도대체 몇 건? 국토부 11건 VS 보험회사 704건. 64배 차이”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322>

민간 보험사에도 드론 보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임.<sup>12)</sup>

참고로 정부에 따르면 현재 드론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sup>13)</sup> 또는 농기계종합보험(농업방제용) 형태로 판매 중이나 운영환경 및 위험도에 따른 특화된 드론 보험 상품은 없는 상황으로, 이에 정부에서는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19.10,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운영 목적·기체중량 등 위험도와 드론 운용 특성에 따른 단기보험상품 등 다양한 드론 보험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보험가입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드론 보험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12) 국토교통부는 2022년 4월경 보험사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드론 보험 관련 정보 제공등의 사항에 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임.

13)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영리목적의 드론(개인용 드론 제외) 사용 시 대인배상보험(1.5억원)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음.

####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 ④ 법 제70조제4항에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⑤ 법 제7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최근 드론의 활용영역이 농업용, 군용, 레저, 화재진압, 택배배송 등으로 넓어지면서 드론 보험가입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드론 보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 현황, 표준약관 제시, 보험 보장범위의 분석 등을 통해 드론 보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민간 보험사에도 드론 보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안 제9조의2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음.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민간 보험사 측에서 정보 제공 미협조 행위 규제조항에 대한 부담을 표시한 바 있어, 별도의 제재조항을 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다른 법에 따른 정보체계의 운영 시에도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를 두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은 두지 않고 있음.<sup>14)</sup>

---

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

한편 현행법 제17조<sup>15)</sup>에서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은 다수의 드론 및 UAM 등의 안전비행을 위한 실증 등을 통해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환경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개정안의 드론 정보체계는 드론 안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사고·보험·기체신고 등 드론 생애주기 전반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임(참고. 드론교통관리시스템과 드론 정보체계의 비교).

---

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삭제 <2009. 2. 6.>

④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사안전법」

**제43조의2(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공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사업자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드론비행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
| 문 의 처        |
| 02)6788-5580 |

## 참 고

## 드론교통관리시스템과 드론 정보체계의 비교

### □ 구축 필요성

- (드론교통관리시스템\*) 다수의 드론 및 UAM 등의 안전비행을 위해 저고도(150m이하) 교통관리체계(운항기술)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해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환경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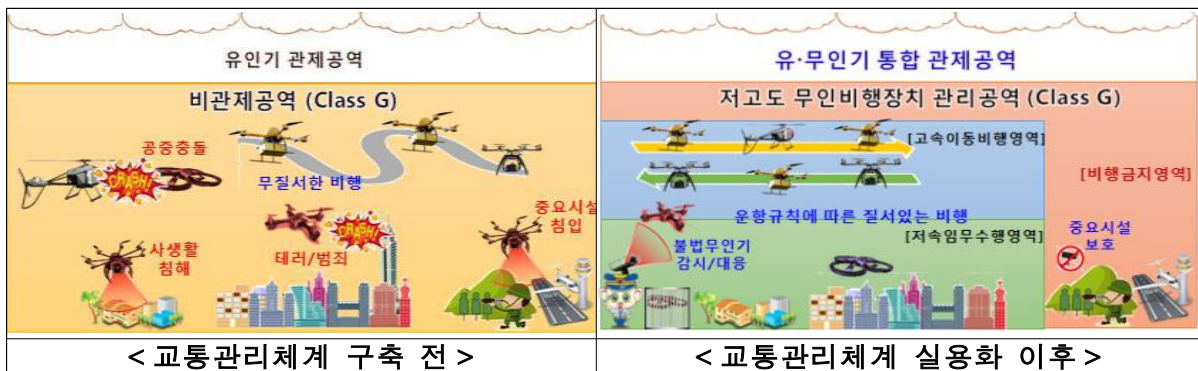
\* 드론법(약칭) 제17조에 이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내용 존재

- (드론 정보체계) 드론 안전 및 산업육성 정책수립 등을 위해서는 사고·보험·기체신고·사업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통합 전산시스템 필요

\* 유사선례) 항공안전법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 □ 시스템 구축내용

- 드론교통관리시스템 : 중앙클라우드 구축('23년) → 시스템 실용화('25년)



- 드론 정보체계 : 드론정보체계 구축('22.12) → 시스템 운영('23년~)



자료: 국토교통부

